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82호

**도시관리계획(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
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07.13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80호(2006.08.17.)로 재정비 결정(변경) 고시된 은평구 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-820호(2022.05.06.) 열람공고, 2022년 제13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09.28.)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-1763호(2022.11.08.)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8일

서울특별시

I. 결정취지

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 정	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	구산동 2번지 일대	108,400	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 (1996.7.5.)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면 적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-	구산동 2번지 일대	준주거지역	108,400	서울시고시 제1996-195호	-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합 계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2	1	30	주간선도로	8,500 (412)	녹번동	신도읍 원흥리	일반도로	66.12.7	-
기정	대로	2	2	30	주간선도로	7,220 (350)	망원동 성산로 (2-52대)	불광동	일반도로	36.12.26	-
기정	소로	2	1	8	집산도로	161	갈현동 468-3대	갈현동 467-2대	일반도로	-	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참조
변경	소로	2	1	8~10	집산도로	161	갈현동 468-3대	갈현동 467-2대	일반도로	-	
기정	소로	2	2	8	집산도로	151	갈현동 464-23대	갈현동 467-3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2	3	8	집산도로	40	대조동 223-26대	① 대조동 ② 224-1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2	4	8	집산도로	108	구산동 1-24대	③ 구산동 ④ 1-31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1	6	국지도로	119	갈현동 463-3대	갈현동 466-19대	일반도로	-	-
변경	소로	3	1	6	국지도로	117	갈현동 463-3대	갈현동 466-19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2	6	국지도로	104	갈현동 464-19대	갈현동 464-1대	일반도로	-	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참조
기정	소로	3	3	6	국지도로	65	⑤ 갈현동 ⑥ 465-16대	⑦ 갈현동 ⑧ 468-5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4	6	국지도로	295	⑨ 대조동 ⑩ 224-26대	⑪ 대조동 ⑫ 223-13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5	6	국지도로	49	⑬ 대조동 ⑭ 48-40대	⑮ 대조동 ⑯ 48-37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6	6	국지도로	141	⑰ 구산동 ⑱ 196-4대	⑲ 구산동 ⑳ 3-38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7	6	국지도로	121	① 구산동 ② 196-1대	③ 구산동 ④ 2-20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8	6	국지도로	198	⑤ 구산동 ⑥ 1-15대	⑦ 구산동 ⑧ 3-38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9	6	국지도로	138	⑨ 역촌동 ⑩ 1-40대	⑪ 역촌동 ⑫ 1-16대	일반도로	-	-
기정	소로	3	10	6	국지도로	86	⑬ 역촌동 ⑭ 1-12대	⑮ 역촌동 ⑯ 1-16대	일반도로	-	-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1	소로2-1	○소로2-1 변경 - 폭원 : 8m → 8~10m (구역내 2m 확폭)	○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및 주변 주거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 내 도로(소로 2-1) 2m 확폭 계획 및 연장감소(소로 3-1)
소로3-1	소로3-1	○소로3-1 변경 - 연장 : 119m → 117m	

나. 공간시설

1) 공공공지 결정 (변경없음)

다. 유통·공급시설계획

1) 시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 지	시 장	갈현동 467-1	2,310	감) 2,310	-	1973.1.12	-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장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역촌중앙시장	○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 - 면적 : 2,310㎡	○특별계획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가구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나.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- 간선가로변은 판매 및 업무시설이 가능한 적정규모로 획지계획을 수립하되 실현가능성 고려
- 적극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대개발규모내 선택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(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)
- 이면부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반영 및 과도한 규제 탈피한 점진적 공동개발 유도(주민의사 반영)

1) 최대개발규모 (변경)

■ 단위획지 최대개발규모 기준

구 분		최대개발규모(㎡)	비 고
기정	간선부(준주거지역)	3,000이하	※최대개발규모의 적용 예외 ① 획지계획 수립된 필지 ②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③ 기공동건축된 경우(하나의 대지로 이용된 경우)
	이면부(준주거지역)	1,000이하	
변경	간선부(준주거지역)	3,000이하	※최대개발규모의 적용 예외 ① 획지계획 수립된 필지 ②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③ 기공동건축된 경우(하나의 대지로 이용된 경우) ④ 특별계획구역
	이면부(준주거지역)	1,000이하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-	○최대개발규모의 적용 예외 사항 추가 - 특별계획구역 추가	○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지역 추가

2) 획지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3) 선택적 공동개발 (변경없음)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불허용도 결정(변경) 조서

■ 기정

구 분	불허용도	비고
A (상업·업무복합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(단, 주상복합은 제외)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B (근린생활시설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C (주거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
※ 간선변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도 단독·공동주택(주상복합제외)불허

■ 변경

구 분	불허용도	비고
A (상업·업무복합)	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(단, 주상복합은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B (근린생활시설)	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C (주거)	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D (특별계획구역)	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(단, 주상복합은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제외)	-

※ 간선변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도 단독·공동주택(주상복합제외)불허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추가	합리적 개발계획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추가

나. 권장용도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■ 기정

구 분	권장용도	비고
1 (상업·업무복합)	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	-
2 (근린생활시설)	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	-

※ 교육 및 연구시설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20%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(2배) 적용함

■ 변경

구 분	권장용도	비고
1 (상업·업무복합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	-
2 (근린생활시설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	-
3 (특별계획구역)	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◦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	-

※ 교육 및 연구시설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20%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(2배) 적용함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추가	◦ 합리적 개발계획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추가

다. 건폐율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기 정	60% 이하	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

라. 용적률 결정(변경) 조서

■ 기정

구 분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비 고
상업·업무복합	300% 이하	360% 이하	-
근린생활시설	300% 이하	360% 이하	-
	250% 이하	300% 이하	-
주 거	250% 이하	300% 이하	-

※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'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' 을 적용한다.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 적용 기준

구분	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
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	◦ 총 용적률 중 공동주택의 용적률 : 250% 이하 ◦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 : 잔여용적률 이하

※ 공공시설 제공(기부채납)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

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도 용적률은 250%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.

③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

-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+1.3 × (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)

■ 변경

구 분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비 고
상업·업무복합	300% 이하	360% 이하	-
근린생활시설	300% 이하	360% 이하	-
	250% 이하	300% 이하	-
주 거	250% 이하	300% 이하	-
특별계획구역(신설)	300% 이하	360% 이하	-

※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'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' 을 적용한다.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 적용 기준

구분	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
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	◦ 총 용적률 중 공동주택의 용적률 : 250%이하 ◦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 : 잔여용적률 이하

※ 공공시설 제공(기부채납)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

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도 용적률은 250%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.

③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5조 22항에 의함

-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+1.3 × (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))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서 결정	◦ 특별계획구역 내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세부개발계획 내에서 용적률을 결정토록 변경

마. 높이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- 간선가로변은 토지이용효율 등 지구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높이 계획 수립
- 이면부는 접도조건에 따른 블록별 평균높이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(사선제한 배제)

■ 기정

구분	최고높이계획	비고
상업·업무복합	60m 이하	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
	50m 이하	-
	30m 이하	-
근린생활시설	50m 이하	-
	30m 이하	-
주 거	30m 이하	-

- ※ ①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은 적용하지 않음
 ② 간선도로(중산로, 서오릉로(폭30m 이상))변에서 민간부분시행지침 제19조1항의 탑상형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최고높이 70m 이하 적용
 ③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 또는 공동 건축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8조(선택적 공동개발)제3항에 의거하여 적용
 ④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높이계획은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함
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(단, 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을 산정 및 높이완화는 중복하여 적용함)
 - 완화할 수 있는 높이 =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(1+(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 당초의 대지면적))이내

■ 변경

구분	최고높이계획	비고
상업·업무복합	60m 이하	-
	50m 이하	-
	30m 이하	-
근린생활시설	50m 이하	-
	30m 이하	-
주 거	30m 이하	-
특별계획구역(신설)	60m 이하	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

- ※ ①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은 적용하지 않음
 ② 간선도로(중산로, 서오릉로(폭30m 이상))변에서 민간부분시행지침 제19조1항의 탑상형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최고높이 70m 이하 적용
 ③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 또는 공동 건축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8조(선택적 공동개발)제3항에 의거하여 적용
 ④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3호(2019.09.19.)」에 따른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준용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높이계획은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함
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(단, 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을 산정 및 높이완화는 중복하여 적용함)
 - 완화할 수 있는 높이 =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(1+(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원래의 대지면적))이내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의 높이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서 결정	◦ 특별계획구역 내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세부개발계획 내에서 높이를 결정토록 변경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건축물 배치(변경)계획

-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
-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보행동선의 연계 강화
- 이면도로의 보/차도 확보로 이면도로 기능 제고

■ 기정

제어요소	적용구역	적용기준	비 고
건축한계선	◦ 간선변(연서로, 서오릉로) 대부분필지 ◦ 이면부 내부필지	◦ 3 ~ 6m ◦ 1 ~ 2m	

■ 변경

제어요소	적용구역	적용기준	비 고
건축한계선	◦ 간선변(연서로, 서오릉로) 대부분필지 ◦ 이면부 내부필지 ◦ 특별계획구역	◦ 3 ~ 6m ◦ 1 ~ 2m ◦ 2 ~ 5m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 - 서측 (변경) : 2m → 3m - 북측 (변경) : 2m → 5m - 동측 (변경없음) : 2m - 남측 (신설) : 3m	◦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 및 차량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변경

나.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(변경없음)

다. 대지내 공지(변경)계획

-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의 활용으로 미관증진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
- 각각부 획지의 공개공지 위치지정으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휴게공간 제공
- 대지내 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

■ 기 정

제어요소	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간선부	◦ 간선가로변의 미관증진 및 보행환경 제고 - 주차장,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(폭3~5m)	◦ 미관지구
	이면부	◦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 확장(폭1~2m)	-
공개공지 위치지정		◦ 주요간선변 및 보행결절점 주변에 지정(쌓지공원) -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- 피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으로 하여야 함	◦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

■ 변 경

제어요소	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간선부	◦ 간선가로변의 미관증진 및 보행환경 제고 - 주차장,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(폭3~5m)	◦ 미관지구
	이면부	◦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 확장(폭1~2m)	-
	특별 계획구역	◦ 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를 설치하며, 필요시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으로 확장	◦ 건축한계선 후퇴부분
공개공지 위치지정		◦ 주요간선변 및 보행결절점 주변에 지정(쌓지공원) - 이미지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- 피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으로 하여야 함	◦ 권장사항으로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의 전면공지(건축한계선 후퇴부분) - 동·서·남측은 보행환경 개선 - 북측은 도로폭원으로 확장	◦ 구산역 보행동선 및 지역 생활가로의 보행도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주민의 보행환경 ◦ 일부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이 가능하도록 도로로 확폭

라. 교통처리계획 (변경없음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형태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기정	1-1 (특별계획 구역)	갈현동 467-2번지 일원	용 도
			A-1
			건폐율
			60% 이하
			용적률
		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
			60m 이하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1(서측) : 2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(북측) : 2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2(동측) : 2m 건축한계선
변경	1-1 (특별계획 구역)	갈현동 467-2번지 일원	용 도	D-3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세부개발계획에서 결정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1(서측)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(북측) : 5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2(동측) : 2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2(남측) : 3m 건축한계선
기정	2-1	갈현동 464-4번지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 : 1m 건축한계선
기정	2-2	갈현동 464-5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464-5대 : 1m 건축한계선 · 464-14대 : 1m 건축한계선
기정	2-3	갈현동 464-8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2 : 1m 건축한계선
기정	2-4	갈현동 464-1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/ 허용용적률 : 300%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2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2 : 1m 건축한계선 · 464-10대 : 1m 건축한계선 · 464-13대 : 1m 건축한계선
기정	3-1	갈현동 468-2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1 : 2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2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3 : 1m 건축한계선
기정	4-1	갈현동 465-3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(465-3대 6m 건축한계선) · 소로 2-2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3 : 1m 건축한계선
기정	5-1	구산동 196-4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최고높이	50m 이하
		형태	-
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6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7 : 1m 건축한계선 · 3-52도 : 1.5m 건축한계선
기정	5-2	용 도	C
		건폐율	60% 이하
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최고높이	30m 이하
		형태	-
		건축선	· 소로 3-6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7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8 : 1m 건축한계선 · 3-52도 : 0.5m 건축한계선 · 3-6도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16도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11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12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13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20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21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22대 : 1.75m 건축한계선 · 3-34도 : 1m 건축한계선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기정	6-1	구산동 2-36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4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7 : 1m 건축한계선
기정	6-2	구산동 2-28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4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8 : 1m 건축한계선 · 2-4도 : 1.5m 건축한계선
기정	6-3	구산동 2-35번지 일원	용 도	C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/ 허용용적률 : 300%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3-7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8 : 1m 건축한계선 · 2-4도 : 1.5~2m 건축한계선 · 2-14도 : 1m 건축한계선 · 2-8대 : 2m 건축한계선 · 2-9대 : 2m 건축한계선 · 2-23대 : 2m 건축한계선 · 2-31대 : 2m 건축한계선
기정	7-1	구산동 1-1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대로 2-2 : 6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4 : 1m 건축한계선
기정	7-2	구산동 1-7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1-8도 : 1m 건축한계선
기정	7-3	구산동 1-12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8 : 1m 건축한계선
기정	7-4	구산동 1-6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4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8 : 1m 건축한계선
기정	7-5	구산동 1-3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1-8도 : 1~4m 건축한계선
기정	8-1	대조동 223-13번지 일원	용 도	B-2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
기정	8-2	대조동 223-16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3 : 1m 건축한계선 · 223-7도 : 1m 건축한계선
기정	8-3	대조동 223-12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3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 · 223-7도 : 1m 건축한계선 · 223-20도 : 1m 건축한계선
기정	9-1	대조동 224-3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(224-24대 6m 건축한계선) · 소로 2-3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 · 224-5대 : 4m 건축한계선 · 224-24대 : 4m 건축한계선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기정	9-2	대조동 224-62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2-3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
기정	10-1	대조동 226-3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5 : 1m 건축한계선 · 48-50도 : 1m 건축한계선 · 48-97도 : 1m 건축한계선 · 226-25대 : 1m 건축한계선 · 226-26대 : 1m 건축한계선 · 226-27대 : 1m 건축한계선
기정	10-2	대조동 226-19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3-4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5 : 1m 건축한계선 · 48-36도 : 1m 건축한계선 · 48-50도 : 1m 건축한계선 · 48-97도 : 1m 건축한계선 · 226-15도 : 1.5m 건축한계선 · 226-19대 : 1m 건축한계선 · 226-30대 : 1m 건축한계선
기정	11-1	역촌동 1-1번지 일원	용 도	A-1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계획내용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1 : 3m 건축한계선 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(1-1대 6m 건축한계선) · 소로 3-10 : 1m 건축한계선 · 1-8도 : 1.25m 건축한계선 · 1-41도 : 1m 건축한계선 · 1-50도 : 1.25m 건축한계선 · 1-58도 : 1m 건축한계선
기정	11-2	역촌동 1-45번지 일원	용 도	B-2
			건폐율	60%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60%이하
			최고높이	5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대로 2-2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9 : 1m 건축한계선 · 1-44도 : 1m 건축한계선
기정	11-3	역촌동 1-31번지 일원	용 도	C
			건폐율	60% 이하
			용적률	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/ 허용용적률 : 300% 이하
			최고높이	30m 이하
			형태	-
			건축선	· 소로 3-9 : 1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0 : 1m 건축한계선 · 1-21도 : 1.5m 건축한계선 · 1-29도 : 1.5m 건축한계선 · 1-39도 : 1.5m 건축한계선 · 1-50도 : 1.25m 건축한계선 · 1-58도 : 1m 건축한계선 · 1-69도 : 1m 건축한계선 · 1-20대 : 1~5m 건축한계선

4. 인센티브 운영계획 (변경없음)

내 용			완화기준	비 고
항 목				
획 지 계 획	획지단위 개 발	획지단위 공동개발	기준용적률 × 0.1	• 획지계획이 2필지 이상에 대해 지정된 경우 적용
공동개발	선택적 공동개발	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5a	• 2필지 : a=0.1 • 3~4필지 : a=0.15 • 5필지 이상 : a=0.2
	공동개발 지정/권장			
건축물 용 도	권장용도	전층권장	기준용적률 × (권장용도면적 ÷ 건축면적) × a	•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에 20% 이상시 인정 - a = 0.2 - 교육 및 연구시설인 경우 : a = 0.4
대지내 공 지	공개공지	위치준수	기준용적률 × 0.1	• 위치지정시
		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{(설치면적 - 의무면적) ÷ 대지면적} × a	• 피로티구조 : a=0.5 • 개방형구조 : a=1.2
	쌈지형, 침상형 공지	위치준수	기준용적률 × 0.1	• 위치지정시
		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a	• 피로티구조 : a=0.5 • 개방형구조 : a=1.2
	건축한계선	전면공지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1.2	
대지내 통 로	보행통로	공공보행통로	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 ÷ 대지면적) × a	• 피로티구조 : a=0.5 • 개방형구조 : a=1.0
		보차혼용통로	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 ÷ 대지면적) × a	
환경 친화적 건축물	옥상녹화	준수시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× 0.3	•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준수시
	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	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1	• 구체적인 설치방안이 있는 경우
	녹색주차장	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• 서울시기준 준수시
	자연지반 보존	보존시	기준용적률 × (자연지반보존면적 ÷ 대지면적) × 0.2	
주차 및 차량 동선	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	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2	• 지정시 적용

- 주) 1. 단, 미관지구가 적용된 대지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을 제외한다.
 2.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확보하여야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부여하지 아니한다.
 3. 권장용도 및 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은 준수 당해 용도(전용면적)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 4. 옥상녹화는 전체지붕, 옥상 바닥 유효면적의 50% 이상, 최소 45㎡ 이상 녹화하여야한다. 이 때 옥상 바닥 유효면적이란 옥상 설비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.
 5. 자연지반보존은 관련법규에 의해 확보하여야하는 면적을 제외한 전체 바닥면적의 50% 이상, 최소 45㎡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
 6. 녹색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0%이상이 녹색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(단, 지상주차장에 한함)

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1. 구역지정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해당필지				비 고
			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	
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	갈현동 467-1 일원	5,693.5	467-1	대	3,627.4	사유지	대상지내 대규모 토지 개발시 기준과 개발방향 제시
			467-2	대	760.3	사유지	
			467-3	대	1,305.8	사유지	

2. 역촌중앙시장 개발(변경) 지침

■ 기 정

구 분		개발지침
용도지역		· 준주거지역
공공시설 확보계획	기부채납	· 구역 면적의 10% 이상
	대상시설	· 공공시설 확보대상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설치·조성 후 기부채납 - 공공공지(337㎡), 도로(233㎡) : 갈현동 467-3 일대 · 시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로 결정
용적률		·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·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 · 상한용적률 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함
높 이	최고높이	· 60m 이하
건축물 용 도	불허용도	· 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상복합 제외)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
	권장용도	· 판매 및 영업시설, 업무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 · 교육 및 연구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
건축물 형 태	저층부	· 건축물 1층 벽면은 투시형 처리
	고층부	· 고층부 건폐율 제한(20% 이하, 단변에 대한 장변비를 1/2 이하)
건축한계선		· 대상지 북, 동, 서측 : 2m
대지내 공지		· 공개공지 위치지정 : 대상지 남서측

■ 변경

구 분		개발지침
용도지역		· 준주거지역
공공시설 확보계획 (변경)	기부채납	· 구역 면적의 10% 이상(시장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(시장 면적의 5%) 별도 확보)
	대상시설	· 공공시설 확보대상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·조성 후 기부채납 - 도로(197.2㎡), 공공시설(372.8㎡) 이상 : 갈현동 467-3 일대 - 필요시 건축물 등 기부채납 · 시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로 결정
용적률 (변경)		· 기준용적률 : 300% 이하 · 허용용적률 : 360% 이하 · 상한용적률 :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※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 및 제55조 22항 의함
높 이	최고높이 (변경)	· 60m 이하 ※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 완화
건축물 용 도	불허용도	· 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상복합 제외)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
	권장용도	· 판매 및 영업시설, 업무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 · 교육 및 연구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
건축물 형 태	저층부	· 건축물 1층 벽면은 투시형 처리
	고층부 (변경)	· 고층부 건폐율 제한(35% 이하,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/2 이하)
건축한계선 (변경)		· 소로 2-1(서측) : 3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1(북측) : 5m 건축한계선 · 소로 3-2(동측) : 2m 건축한계선 · 소로 2-2(남측) : 3m 건축한계선
대지내 공지 (변경)		· 공개공지 위치지정 : 대상지 남서측, 남동측(신설) · 전면공지 :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환경 개선 및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이 가능하도록 조정

※ 공공시설 확보계획 대상시설 중 도로면적(197.2㎡)은 향후 지적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Ⅲ.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

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1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	갈현동 467-1 일원	5,693.5	-	5,693.5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구 성 비(%)	최초결정일	비 고
준주거지역	5,693.5	100.0	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 (1996.7.5.)	-
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3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합 계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소로	2	1	8	집산도로	161	갈현동 468-3대	갈현동 467-2대	일반도로	-	구역내 2m 확폭
변경	소로	2	1	8~10	집산도로	161	갈현동 468-3대	갈현동 467-2대	일반도로	-	
기정	소로	2	2	8	집산도로	151	갈현동 464-23대	갈현동 467-3대	일반도로	-	
기정	소로	3	1	6	국지도로	119	갈현동 463-3대	갈현동 466-19대	일반도로	-	연장 감소
변경	소로	3	1	6	국지도로	117	갈현동 463-3대	갈현동 466-19대	일반도로	-	
기정	소로	3	2	6	국지도로	104	갈현동 464-19대	갈현동 464-1대	일반도로	-	-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1	○소로2-1 변경 - 폭원 : 8m → 8~10m(구역내 2m 확폭)	○ 대상지 및 주변 주거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 내 도로(소로 2-1) 2m 확폭 계획 및 연장감소(소로 3-1)
소로3-1	○소로3-1 변경 - 연장 : 119m → 117m(2m 연장감소)	

나. 유통·공급시설계획

1) 시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 지	시 장	갈현동 467-1	2,310	감) 2,310	-	1973.1.12	-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장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역촌 중앙시장	○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 - 면적 : 2,310㎡	○특별계획구역 개발지침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

1.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위 치	면 적(㎡)		해당필지		비 고
		기정	변경	지 번	면 적	
1	갈현동 467-1 일원	5,693	5,693.5	467-1	3,627.4	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
				467-2	760.3	
				467-3	1,305.8	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가구면적 변경 : 5,693㎡ → 5,693.5㎡	◦ 소수점 이하 오기 정정

2. 건축물에 관한 (변경)계획

가. 건축물 용도 결정 (변경)조서

■ 기정

구 분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비 고
불해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(단, 주상복합은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	좌 동	-
권장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	좌 동	-

※ 교육 및 연구시설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20%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(2배) 적용함

■ 변경

구 분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비 고
불해용도 (D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(단, 주상복합은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	좌 동	-
권장용도 (3)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	좌 동	-

※ 교육 및 연구시설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20%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차등(2배) 적용함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변경	◦ 법령 개정에 따른 지침 변경

나. 건폐율 결정 (변경)조서

■ 기정

구 분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비 고
건폐율	· 60% 이하 - 고층부 건폐율 제한 (20% 이하,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/2 이하)	좌동	-

■ 변경

구 분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비 고
건폐율	· 60% 이하 - 고층부 건폐율 제한 (35%이하, 단변에 대한 장변비율 1/2 이하)	좌동	-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고층부 건폐율 제한 변경 - 20% 이하 → 35% 이하	◦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고층부 건폐율 변경

다. 용적률 결정 (변경)조서

구 분	기 정		변 경 (안)		비 고
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
기 준	300% 이하	-	300% 이하	300% 이하	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출
허 용	360% 이하	-	360% 이하	360% 이하	
상 한	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	-	법적상한 2배 이하	500% 이하	

※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) 비율을 건축물 용적률의 10% 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함

- 입지특성과 공공기여(기부채납 10% 이상 등)를 감안,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% 이상 계획 가능함
-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, 다세대, 연립주택, 기숙사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

※ 공공시설 제공(기부채납)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경우도 상기 비율로 배분 적용함
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도 용적률 250%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.
- 상한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(2021)」에 의함
 -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α토지 + 0.7α현금 · 건축물)
 - * α토지: 공공시설부지(토지)로 제공되는 면적 / 공공시설부지(토지) 제공후 대지면적
 - * α현금 · 건축물: 공공시설부지(건축물설치비용 환산부지)로 제공되는 면적 / 공공시설부지(토지) 제공후 대지면적

※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 제22항(2019.3.28. 신설) 및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3호(2019.09.19.)」에 따른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준용

-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%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.
-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'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'은 적용하지 않는다.
- 건축물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)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% 이상으로 계획한다.
(단,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)
-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을 적용하되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-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.
- *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부칙(제7093호, 2019.3.28.)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은 적용하지 않는다. 다만,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	변경내용	변경사유
	용적률	○상한용적률 결정 - 개발지침 : 법적상한 2배 이하 - 세부개발계획 : 500% 이하	○ 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산출하여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함

라. 높이 결정 (변경)조서

구 분	기정		변경(안)		비 고
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
최고높이	· 60m 이하	-	· 60m 이하 ※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이내 완화	· 70m 이하	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라 10m 완화

※ 특별계획구역의 높이계획은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함

※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(단, 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정 및 높이완화는 중복하여 적용함)

- 완화할 수 있는 높이=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×{1+(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당초의 대지면적)} 이내

※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제22항(2019.3.28. 신설) 및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3호(2019.09.19.)」에 따른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준용

-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. 단,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,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(심의)를 거쳐야 하고,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.

*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부칙(제7093호, 2019.3.28.)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은 적용하지 않는다. 다만,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	변경내용	변경사유
	높이	○최고높이 60m 이하 ※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이내 완화	○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적용기준'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

가. 건축물의 배치 결정 (변경)조서

구 분	기정		변경(안)		비 고
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
건축 한계선	· 소로 2-1 : 2m	-	· 소로 2-1(서측) : 3m	· 소로 2-1(서측) : 3m - 보도형으로 3m 조성	
	· 소로 3-1 : 2m	-	· 소로 3-1(북측) : 5m	· 소로 3-1(북측) : 5m - 보도형으로 3m 조성 - 차도형으로 2m 조성	
	· 소로 3-2 : 2m	-	· 소로 3-2(동측) : 2m	· 소로 3-2(동측) : 2m - 보도형으로 2m 조성	
	-	-	· 소로 2-2(남측) : 3m	· 소로 2-2(남측) : 3m - 보도형으로 3m 조성	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 특별계획구역 내 - 서측 (변경) : 2m → 3m - 북측 (변경) : 2m → 5m - 남측 (신설) : 3m	◦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 및 차량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변경

나. 건축물의 형태 결정 (변경)조서

구 분	기정		변경(안)		비 고
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
저층부	· 건축물 1층 벽면은 투시형 처리	-	· 건축물 1층 벽면은 투시형 처리	· 개구부를 포함 최소 50% 이상 투시형 처리	
고층부	· 고층부 건폐율 제한 - 건폐율 20% 이하 - 단변에 대한 장변 비율 1/2 이하	-	· 고층부 건폐율 제한 - 건폐율 35% 이하 - 단변에 대한 장변 비율 1/2 이하	· 고층부 건폐율 제한 - 건폐율 35% 이하 - 단변에 대한 장변 비율 1/2 이하	⑩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○ 고층부 건폐율 변경 - 20% 이하 → 35% 이하	○ 가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건축계획 실현을 위해 고층부 건폐율 완화 적용

(3) 대지 내 공지

구 분	개발지침	세부개발계획	비 고
공개공지	· 위치지정 : 대상지 남서측, 남동측	· 위치 : 남서측, 남동측 위치지정 준수 · 면적 : 남서측 100㎡ 이상 남동측 200㎡ 이상	
전면공지	· 가로외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보도를 설치하며, 필요시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도로폭원으로 확장	· 서측(3m), 북측(일부 3m) 동측(2m), 남측(3m) 건축한계선내 전면공지는 보도로 설치 · 북측(일부 2m)의 건축한계선내 전면공지는 소로 3-1호선과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차로로 확폭	

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공개공지	· 위치지정 - 대상지 남서측 → 남서측, 남동측(신설)	· 구산역 일대의 보행활동과 구역내 계획되는 공공시설 이용 주민의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고, 지역의 가로환경 개선이 가능한 공간으로 공개공지 위치 변경
전면공지	· 서측(3m), 북측(일부 3m) 동측(2m), 남측(3m)은 건축한계선내 보도를 설치 · 북측(일부 2m) : 건축한계선내 차도 확폭	· 대상지 주변의 가로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를 설치하고, 북측 도로(소로 3-1)의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해당 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

4. 공공기여 계획

구 분		개 발 지 침		세부개발계획	비 고
		기 정	변 경		
기준 / 계획		구역면적의 10% 이상	구역면적의 10% 이상 (시장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(시장면적의 5%) 별도확보)	구역면적의 24.2% (시장면적 5% 포함)	
공공 시설 등	종류	도로 : 233㎡	도로 : 197.2㎡	도로 : 197.2㎡	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 7 조」 및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(2021)」에 의함
		공공공지 : 337㎡	공공기여건축물 : 337㎡ 이상	공공기여건축물 : 1,108.9㎡	
	면적	570㎡ 이상	570㎡ 이상	1,306.1㎡	
공공임대주택 (대지지분)		-	-	363.0㎡ (6.4%)	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22항」 및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' 적용
합계		10% 이상	10% 이상	30.6%	

5. 인센티브 운영계획

가. 허용용적률 계획

항 목	세 분		완화기준	비 고
대지내 공 지	공개공지	위치준수	기준용적률 X 0.1	· 위치지정 시
		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	기준용적률 X {(설치면적 - 의무면적) ÷ 대지면적} X a	· 피로터구조 : a = 0.5 · 개방형구조 : a = 1.2
	건축한계선	전면공지	기준용적률 X (제공면적 ÷ 대지면적) X 1.2	-
환경친화적 건축물	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	준수시	기준용적률 X 0.1	· 구체적인 설치방안이 있는 경우
	자연지반 보존	보존시	기준용적률 X (자연지반보존면적 ÷ 대지면적) X 0.2	-

- 주) 1. 단, 미관지구가 적용된 대지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을 제외한다.
 2.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부여하지 아니한다.
 3. 권장용도 및 연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은 순수 당해 용도(전용면적)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 4. 옥상녹화는 전체지붕, 옥상 바닥 유효면적의 50% 이상, 최소 45㎡ 이상 녹화하여야 한다. 이 때 옥상 바닥 유효면적이란 옥상 설비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.
 5. 자연지반보존은 관련법규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제외한 전체 바닥면적의 50% 이상, 최소 45㎡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

나. 상한용적률 (변경) 계획

1) 상한용적률 계획

-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(2021)」에 의함

$$(기부채납) 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 \times (1 + 1.3\alpha \text{토지} + 0.7\alpha \text{현금} \cdot \text{건축물})$$

- * α 토지 : 공공시설부지(토지)로 제공되는 면적 / 공공시설부지(토지) 제공후 대지면적
- * α 현금·건축물 : 공공시설부지(건축물설치비용 환산부지)로 제공되는 면적 / 공공시설부지(토지) 제공후 대지면적
- * 공공시설등 부지(토지)에는 '기부채납 부지' 및 '건축물(공공시설 등) 기부채납 토지 지분' 포함

-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 제22항(2019.3.28. 신설) 및 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3호(2019.09.19.)」에 따른 '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' 준용

$$\text{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확보 용적률} = \text{증가한 용적률} \times 1/2$$

- *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%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

■ 상한용적률 계획

구 분		세부개발계획	계획(안)주1)			비 고	
기준용적률		300%	좌동			-	
허용용적률		360%	좌동			- 개발지침의 인센티브 항목 충족	
상한 용적률	기부 채납	442%	소로2-1(2m)확폭		81.7㎡	442.60% → 442%	시장해지 5% (115.5㎡) 제외
			공공 청사	토지	396.2㎡		
				공사비	784.2㎡		
	공공 임대 주택	증가된 용적률 58% 증가된 용적률의 1/2 = 29% 29%의 연면적 1,594㎡	공공임대주택 33.02% - 연면적 : 1,814.7㎡			66.04% → 66%	-
		442%+(29%×2) = 500%					
계		500% 이하				508%	-

주1) 상기 계획(안)의 기부채납은 공부면적 및 cad를 근거로 산출된 면적으로 향후 측량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공공임대주택 역시 건축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단, 변경시 세부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함

■ 상한용적률 산출 근거

구 분			내 용	비 고
상한 용적률	기부 채납	기부채납	· 토지(도로+건축물 지분면적) : 477.9㎡(81.7㎡+396.2㎡) · 공공기여건축물(공사비 환산면적) : 784.2㎡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 「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」
		도시계획시설 (시장)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	·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 면적 : 2,310.0㎡ · 공공기여율 : 시장면적의 5% · 공공기여 면적 : 2,310.0㎡×5% = 115.5㎡	
		인센티브 산정용 기부채납	· 1,377.6㎡(토지+건축물)-115.5㎡(시장폐지에 따른 공공기여) = 1,262.1㎡	
		산정기준	· 허용용적률×{1+1.3×(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/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 적+0.7×(공공기여건축물 공사비 환산부지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 면적))} · 360%×{1+1.3×(477.9㎡/5,100.1㎡)+0.7×(784.2㎡/ 5,100.1㎡)} = 442.60%	
	공공 임대 주택	기부채납	·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: 363.0㎡ - 연면적 : 1,814.7㎡(증가된 용적률의 1/2 = 33.02%)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 22항
산정기준		- 증가된 용적률 = 66.04% - 증가된 용적률의 1/2 = 33.02%		
용적률 산출		· 442.60%+(33.02%×2) = 508.63%		
계			500%	-

■ 공공청사 상한용적률 산정을 위한 제공 내역

구 분	내 용	비 고
공공청사	2,980.1㎡	지상2층 - 전용면적 : 1,645.5㎡ - 공용면적 : 335.3㎡ (계단, 엘리베이터 등) - 지하 공용면적 : 999.3㎡ (지하주차장, 기계실 및 전기실 등)
건축비	3,000,000원/㎡	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(2020) - 주민공동이용시설 400㎡ 초과 적용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(안)(2021.07) -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
설치비용	8,940,300,000원	설치비용 : 표준 건축비 × 건축연면적 ⇒ 3,000,000원/㎡ × 2,980.1㎡ = 8,940,300,000원
부지가액	11,400,000원/㎡	개별공시지가 : 11,400,000원/㎡ - 사업주 제공 감정평가액 : 41,352,360,000/3,627.4㎡(467-1번지 면적)
공사비 환산부지면적	784.2㎡	환산부지면적 : 설치비용 ÷ 부지가액 ⇒ 8,940,300,000원 ÷ 11,400,000원/㎡ = 784.2㎡
공공청사지분면적	396.2㎡	(공공청사 공급면적/전체 지상연면적) × 도로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⇒ (1,980.8㎡/27,480.44㎡) × 5,496.3㎡ = 396.2㎡
총 제공면적	1,180.4㎡	기부채납 비율(시장폐지에 따른 비율 제외) : 22.2%

※ 상한용적률 산정을 위한 제공 내역은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(2021)」에 의함

IV. 관계도면 :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4),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51-7413)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기반시설 결정도(기정)



■ 기반시설 결정도(변경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

■ 개발지침도(기정)



■ 개발지침도(변경)



■ 종합결정도

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3217호

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주차장법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) 및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)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, 수취인미거주, 수취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2월 8일
서울특별시

1. 건 명 :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
2. 근 거 : 주차장법 제9조,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별첨
4. 공고기간 : 2022. 12. 8.~2022. 12. 22.(14일간)
5.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
 - 가.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-2290-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이의신청 기간(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)
 - 다.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(<https://etax.seoul.go.kr>) 통하여 납부 가능
6. 유의사항
 -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(서울시설공단 ☎02-2290-6200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

연번	고지번호	차량번호	차종	납세번호	주차장	주차시간	입차일자	입차시각	출차일자	출차시각	부과금액	주차요금	가산금	납부자	주소	반송사유	납부기한
	35건																
1	20216179	307마6422	BMW M2	000047339214201 20220925003004	홍련원공원	0000:14	2022-08-01	18:49	2022-08-01	19:03	1,600	1,600	0	박0정	서울특별시마포구신 촌로8길	주소불명	2022-12-15
2	20215855	10루3296	그랜저(GRA NDEUR)	000047339214201 20220925002828	구로디지털 단지역	0001:20	2022-08-03	15:20	2022-08-03	16:40	4,100	4,100	0	김0길	서울특별시영천구오 목로24길	폐문부재	2022-12-15
3	20216013	61주1623	K5	000047339214201 20220925002804	사당노외	0002:30	2022-08-03	02:37	2022-08-03	05:07	6,000	6,000	0	박0주	경기도시흥시증심상 가로	폐문부재	2022-12-15
4	20216304	126오7927	SM7	000047339214201 20220925002620	북정역	0003:01	2022-08-05	13:27	2022-08-05	16:28	3,100	3,100	0	박0록	경기도성남시수정구 논골로63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5	20216408	68나9984	SM3	000047339214201 20220925002613	잠실역	0003:06	2022-08-05	13:51	2022-08-05	16:57	3,000	3,000	0	장0현	충청남도예산군삼교 읍신리	이사불명	2022-12-15
6	20216420	34소3575	K3	000047339214201 20220925002606	신대방역	0001:32	2022-08-05	16:06	2022-08-05	17:38	4,900	4,900	0	정0태	인천광역시서구크리 스탈로 102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7	20216421	34소3575	K3	000047339214201 20220925002514	신대방역	0001:38	2022-08-06	11:52	2022-08-06	13:30	5,200	5,200	0	정0태	인천광역시서구크리 스탈로 102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8	20215976	109하6962	캐스퍼(CASP ER)	000047339214201 20220925002507	세종로	0004:57	2022-08-07	23:38	2022-08-08	04:35	12,700	12,700	0	주식회사 그린카	경기도 고양시일산동 구위서로2로11번길	수취인불명	2022-12-15
9	20216157	151아8069	쏘렌토 하이브리드	000047339214201 20220925002482	신명화역	0001:14	2022-08-07	10:22	2022-08-07	11:36	1,200	1,200	0	목0수	인천광역시서구봉오 세2로	폐문부재	2022-12-15
10	20216028	27저8622	그랜저(GRA NDEUR)	000047339214201 20220925002323	구로디지털 단지역	0004:48	2022-08-08	16:38	2022-08-08	21:26	15,000	15,000	0	성달석(주)	서울특별시강남구강 남대로84길	이사불명	2022-12-15
11	20216228	37조0851	쏘나타(SON ATA)	000047339214201 20220925002309	종로	0001:27	2022-08-08	19:28	2022-08-08	20:55	1,400	1,400	0	홍0영	서울특별시영천구남 부순화로36길	폐문부재	2022-12-15
12	20216248	56모2335	코나(KONA)	000047339214201 20220925002192	산천유수지	0010:29	2022-08-10	08:49	2022-08-10	19:18	16,300	16,300	0	김0원	경기도 고양시주신화 공로	폐문부재	2022-12-15
13	20216250	22모3999	코란도 투리스모	000047339214201 20220925002148	산천유수지	0004:02	2022-08-11	11:29	2022-08-11	15:31	6,300	6,300	0	김0준	경기도 고양시부시오목 로	폐문부재	2022-12-15

연번	고제번호	차량번호	차종	납세번호	주차장	주차시간	입차일자	입차시각	출차일자	출차시각	부과금액	주차요금	가산금	납부자	주소	반송사유	납부기한
14	20216305	69마2631	아반떼 (AVANTE)	000047339214201 20220925002101	북정역	0000:13	2022-08-11	17:37	2022-08-11	17:50	200	200	0	인0열	경기도성남시수정구 성남대로	폐문부재	2022-12-15
15	20216053	154호1287	아반떼(AVAN TE)	000047339214201 20220925002079	수서역	0002:06	2022-08-12	17:09	2022-08-12	19:15	8,300	8,300	0	(주)그림카	경기도평택시서정역 포38번길	이사불명	2022-12-15
16	20216401	45무2818	K5	000047339214201 20220925001879	잠실역	0004:10	2022-08-14	17:08	2022-08-14	21:18	20,000	20,000	0	정0응	서울특별시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	폐문부재	2022-12-15
17	20216375	28고1765	싼타페(SANT AFE)	000047339214201 20220925001770	도봉산역	0005:43	2022-08-15	09:30	2022-08-15	15:13	5,800	5,800	0	박0옥	경기도서울시시화호 수전로2길	폐문부재	2022-12-15
18	20216061	31두7329	A7 45 TDI quattro	000047339214201 20220925001688	수서역	0002:43	2022-08-17	13:42	2022-08-17	16:25	2,100	2,100	0	김0림	경기도광주시초월읍 산이길151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19	20216252	67가0931	아반떼(AVAN TE)	000047339214201 20220925001368	천호역	0002:36	2022-08-20	12:00	2022-08-20	14:36	8,300	8,300	0	최0천	서울특별시중랑구중 암천로	폐문부재	2022-12-15
20	20216098	14마4495	니로 하이브리드	000047339214201 20220925001153	구파발역	0000:10	2022-08-23	11:48	2022-08-23	11:58	100	100	0	김0중	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지정로	폐문부재	2022-12-15
21	20216101	19주6530	맥스크루즈 (MAXCRUZ)	000047339214201 20220925001077	세종로	0005:04	2022-08-24	10:56	2022-08-24	16:00	26,200	26,200	0	차0현	경기도포천시소흘읍 북술로	폐문부재	2022-12-15
22	20216109	25사6377	BMW 520d	000047339214201 20220925001054	천호역	0011:47	2022-08-24	09:52	2022-08-24	21:39	36,900	36,900	0	박0석	서울특별시강서구공 향대로8길	폐문부재	2022-12-15
23	20216171	11라1497	모닝	000047339214201 20220925001047	한강진역	0003:45	2022-08-24	19:03	2022-08-24	22:48	9,000	9,000	0	류0빈	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관올대로	폐문부재	2022-12-15
24	20216172	272무7680	스파크 1.0	000047339214201 20220925001031	한강진역	0001:35	2022-08-24	17:12	2022-08-24	18:47	3,800	3,800	0	허0환	인천광역시서구간재 물2길	폐문부재	2022-12-15
25	20216191	332오7847	펠리세이드(P ALISADE)	000047339214201 20220925000908	적선동 노외	0001:46	2022-08-25	12:40	2022-08-25	14:26	1,400	1,400	0	안0성	서울특별시영북구국 악산로	폐문부재	2022-12-15
26	20216113	인천8501260 8	다니고백	000047339214201 20220925000846	개화산역	0006:05	2022-08-26	23:48	2022-08-27	05:53	5,100	5,100	0	조0호	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석바위로	폐문부재	2022-12-15

연번	고제번호	차량번호	차종	납세번호	주차장	주차시간	입차일자	입차시간	출차일자	출차시간	부과금액	주차요금	가산금	납부자	주소	반송사유	납부기한
27	20216173	38우1358	SM3	000047339214201 20220925000823	한강전역	0001:39	2022-08-26	13:29	2022-08-26	15:08	8,000	8,000	0	이0아	서울특별시강서구 향남로7길	폐문부재	2022-12-15
28	20216306	69마2631	아반떼 (AVANTE)	000047339214201 20220925000791	북정역	0000:18	2022-08-26	22:00	2022-08-26	22:18	300	300	0	인0열	경기도성남시수정구 성남대로	폐문부재	2022-12-15
29	20216114	55아0670	K3	000047339214201 20220925000777	종묘	0000:46	2022-08-27	12:13	2022-08-27	12:59	4,000	4,000	0	서0일	경기도부천시소사로 794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30	20216117	01누0390	A6 35 TDI quattro	000047339214201 20220925000747	종묘	0000:37	2022-08-27	17:16	2022-08-27	17:53	3,200	3,200	0	김0국	서울특별시중구청계 천로	폐문부재	2022-12-15
31	20216288	57로1350	올란도 2.0 디젤	000047339214201 20220925000678	신설동	0001:32	2022-08-27	13:59	2022-08-27	15:31	4,900	4,900	0	유0석	경기도남양주시오남 읍진건오남로	폐문부재	2022-12-15
32	20216376	28고1765	싼타페 (SANT AFE)	000047339214201 20220925000487	도봉산역	0004:30	2022-08-28	11:19	2022-08-28	15:49	4,500	4,500	0	박0옥	경기도시흥시시화호 수천원2길	폐문부재	2022-12-15
33	20216163	169마1869	셀토스	000047339214201 20220925000296	세종로	0003:44	2022-08-30	18:14	2022-08-30	21:58	5,600	5,600	0	이0정	서울특별시서초구명 남로4길	폐문부재	2022-12-15
34	20216307	69마2631	아반떼 (AVANTE)	000047339214201 20220925000229	북정역	0000:07	2022-08-30	17:31	2022-08-30	17:38	100	100	0	인0열	경기도성남시수정구 성남대로1416번길	폐문부재	2022-12-15
35	20216299	54로3424	모닝	000047339214201 20220925000120	마포유수지	0001:05	2022-08-31	12:54	2022-08-31	13:59	1,400	1,400	0	김0건	서울특별시8층구지 양로17길	폐문부재	2022-12-15